

의안번호	2215574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6.01.29.
추계번호	25C738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2 (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)	(제1항) 지역의 학생수,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다.	
		(제3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
		(제4항)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의2 (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교육부는 2016년까지 시·도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통·폐합 기준을 설정·권고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현재는 각 시·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 -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40명, 중·고등학교 300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,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함

[표] 교육부 권고에 따른 소규모 학교 기준

구 분		학생 수
면·도서·벽지		60명 이하
읍	초	120명 이하
	중	180명 이하
도시지역	초	240명 이하
	중	300명 이하

자료: 교육부, 「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」, 2016.07.04, 2p

- 한편,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
 - 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정의하나,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을 달리 하거나 소규모 학교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의 및 세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음
- 이에 시·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, 통학비 지원, 공동학구제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특히, 강원특별자치도(더 나은 작은 학교), 전라남도(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), 경상북도(작은학교 자유학구제) 등은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시·도교육청별로 운영 현황이 상이하여 지원 범위 산정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 예산과의 중복이 존재하여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
 - 참고로, 개정안에 명시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내 무선망 확충, 인프라 전담 인력 배치 등을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음

- ☐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